

<첨부> 응시자격 확인서(박사후연구원)

지원자 본인은 한국기계연구원 2024년 3차 연수직 채용 공고의 지원자격을 확인하며,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 합니다.

자격요건 확인사항	네(맞음)	아니오
○ 2025년 2월 10일 이내 근무시작이 가능한 자가 맞는가?		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(개정 2023.4.11.)*가 없는 자가 맞는가? 1. 피성년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	
○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가?		
○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않았는가?		
○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가?		
○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맞는가?		
○ 임용예정일 기준(시점)에 박사학위 취득(졸업예정자 포함*) 이후 5년 이내인 자 인가? * 임용예정일 전에 졸업증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? -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 학위취득 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		
○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(시점)에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, 면제되었거나, 미필자 중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복무만료 예정 또는 전직승인조건을 충족한 자가 맞는가? * 여성의 경우, "네" 표기		

본인은 위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자 :

(서명)

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